

장기 국외체재자 복무관리 안내문

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 중 국외체재가 가능하고, 이에 대해 다른 병역의무이행자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국외체재 중인 전문연구요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복무관리 하고 있으며, 부실복무 적발 시 조기귀국, 편입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아울러 국외체재 중 신고사항 등을 안내드리니 위반사항이 없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「국외체재 중 업무수행 상황부」 작성·제출(서식 별도붙임)

- 대상: 국외여행허가 기간 3개월 초과자(전원)
- 방법: 「국외체재 중 업무수행 상황부」를 매일 작성하고, 현지책임관 확인 후 2주 단위 국내 병역지정업체 송부(지정업체에서 관할 병무청 제출)

○ 원격 실태조사 시 점검서류 제출

- 대상: 국외여행허가 기간 3개월 초과자(일부: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)
※ 조사시점에 따라 3개월 초과자라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방법: 병역의무자 및 현지책임관 e-mail로 복무실태 점검서류 송부 → 서류 작성 후 회신

○ 현지방문 실태조사

- 대상: 국외여행허가 기간 3개월 초과자(일부: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)
※ 조사시점에 따라 3개월 초과자라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방법: 조사계획에 따라 연구기관 방문조치 및 현지책임관 인터뷰 일정 조율

○ 「국외체재 중 연구성과 확인서」 제출(서식 별도붙임)

- 대상: 국외여행허가 기간 3개월 초과자(일부: 국외출장 사유 출국자)
- 방법: 「국외체재 중 연구성과 확인서」를 작성하여 국내 병역지정업체장 확인 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

서울지방병무청장